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 개정(시행'21. 1. 13.)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 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나. 국민권익위원회[제도개선총괄과-1296(2021. 4. 16.)]의 '지자체 장기근속· 퇴직(예정)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' 권고사항 이행

3. 주요내용

가. 불필요한 용어 삭제 (안 제2조제1호)

나.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률 적인 후생복지사업 삭제 (안 제7조제6호)

다.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(안 제9조제4항)

라. 군의회 의장과의 통합운영 조항 신설 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전략담당관-3831(2021. 11. 19.)]
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48280(2021. 11. 18.)]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21. 11. 23. ~ 12. 13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, 지방공무원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후생복지사업 삭제,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군의회와 통합운영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소속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